

무역상무학회지 제27권
2005년 8월 pp. 29~65

논문 접수일 2005.07.30
논문 심사일 2005.08.01
심사 완료일 2005.08.09

동북아국가들의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비교법적 고찰*

최석범**

-
- I. 서론
 - II. 선행연구분석 및 중재법상의 준거법
 - III. 중재판정의 형식과 효력
 - IV. 중재판정의 승인·집행과 주요내용 비교
 - V. 결론-시사점
-

I. 서론

일반적으로 일정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법원의 법관이 내리는 판단을 판결이라고 하고 법관이 아닌 사인이 내리는 판단을 판정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재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부탁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최종적인 결정을 의미하는데 Domke도 “중재판정이란 분쟁에 해결에 있어서 중재인의 최종적인 결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¹⁾

이와 같이 중재판정이란 중재판정부에 부탁된 분쟁의 실체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내려진 일체의 판정을 말하며 잠정적 중재판정을 포함한다. 일

* 이 논문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72-BS3035).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1) Martin Domke, *Domke on Commercial Arbitration: The Law and Practice of Commercial Arbitration*, Callaghan & Company, 1984, p.419.

반적으로 중재판정은 중재에 부탁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반드시 특정되어야만 중재판정으로서 유효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북아지역이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대두되면서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대응하고, 동북아 경제를 북미, 유럽과 더불어 세계 3대 경제중심의 하나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FTA) 체결이 필수적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200개가 넘는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전 세계 교역의 절반이 지역무역협정 체약국간에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그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지역주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어 FTA협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FTA에 참가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손실도 증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북아지역이 하나의 경제블록으로 탄생되는 동북아FTA가 체결되는 경우에 지금 현재의 역내무역보다 더욱 더 많은 역내무역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에 따라 거래 당사자간의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분쟁해결을 원활하게 도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중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북아국가에서의 중재법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면상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북아국가에서의 중재법상 중재판정에 한정하여 비교법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동북아국가들의 중재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동북아지역에서 중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그 연구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경우 동북아지역에 속하지는 않지만 주요 경쟁대상국의 하나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비교대상국가로 포함하였음을 미리 언급하여 둔다.

II. 선행연구분석 및 중재법상의 주거법

1. 선행연구분석

동북아 개별국가의 중재법과 관련된 선행연구로서 이주원의 “CIETAC 중재의 중재절차상 실무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²⁾는 한중중재절차의 비교, 사례분

석 및 시사점을 논하고 있다. 신군재외1인의 “중국의 ADR제도와 국제중재판정의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연구”³⁾는 중국의 ADR분쟁해결기구, 중국의 분쟁해결방법, 중국의 중재판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다루고 있다. 최석범의 “중국상사중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⁴⁾은 중국의 법률체계 및 국제상사분쟁의 현황, 중국의 국제상사분쟁의 해결방법,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분쟁처리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재법과 관련된 선행연구로서 우성구의 “우리나라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적용상의 쟁점”⁵⁾이 있는데 쟁점을 중재합의존부와 청구권포기, 중재인의 선정과 기피, 중재의 개시 및 비용과 출소기한, 중재심리와 증거조사, 중재판정과 구제 등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홍성규외1인의 “개정한국중재법의 주요논점과 과제”⁶⁾는 개정한국중재법의 주요내용에 관한 비교검토, 개정한국중재법의 향후과제를 다루고 있다.

동국아국가들간 또는 동북아국가와 다른 지역의 국가의 중재법에 관한 비교법적 선행연구로서 최장호의 “한국과 대만의 중재법 개정에 관한 비교연구”⁷⁾가 있는데 한국과 대만의 중재법제정과 개정배경, 문제점, 개정필요성, 개정추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홍창기의 “국제상사중재제도에 있어서 중재판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⁸⁾은 국제상사중재 및 중재판정, 국제상사중재판정에 관한 법률적 제문제를 다루고 있다.

장문철의 “동북아국가들과 캐나다의 상사중재법의 상이점”⁹⁾은 중재제도에 대

- 2) 이주원, “CIETAC 중재의 중재절차상 실무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9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6, pp.185-201.
- 3) 신군재·김경배, “중국의 ADR제도와 국제중재판정의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9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3, pp.219-235.
- 4) 최석범, “중국상사중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중재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12, pp.135-172.
- 5) 우성구, “우리나라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적용상의 쟁점” 「국제상학」, 제14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1999.11, pp.109-127.
- 6) 홍성규·김종락, “개정한국중재법의 주요논점과 과제”, 「국제상학」, 제18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3.6, pp.191-213.
- 7) 최장호, “한국과 대만의 중재법 개정에 관한 비교연구”, 「국제상학」, 제14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1999.11, pp.109-127.
- 8) 홍창기, “국제상사중재제도에 있어서 중재판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무역학회지」, 제28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3.6, pp.205-238.
- 9) 장문철, “동북아국가들과 캐나다의 상사중재법의 상이점”, 「캐나다연구」, 제2집,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1990, pp.117-133.

한 문화적 태도의 상이점, 양측의 상사중재법의 상이성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그리고 중재법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남북한 상사중재에 대한 선행연구로서 김상호의 “ADR제도를 통한 남북한 상사분쟁 해결방안”¹⁰⁾은 개방에 따른 북한의 법률제정과 분쟁해결구조, 분쟁의 해결을 위한 남북한 당국의 노력, 분쟁해결촉진을 위한 남북한협력의 과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최석범 외1인의 “동북아 각국의 중재판정부 구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¹¹⁾에서 동북아각국에서의 중재법대상, 중재판정부의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동북아 각국의 중재법상 중재판정을 다루고 있는 논문은 없었기 때문에 동북아 각국의 중재법상 중재판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2. 중재판정의 준거법

1) 한국의 중재법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판정을 내려야 한다.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¹²⁾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¹³⁾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평과 선에 따라 판정을 내릴 수 있고¹⁴⁾ 중재판정부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고 해당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상관습을 고려하여야 한다.¹⁵⁾

UNCITRAL모델법과 같이¹⁶⁾ 한국 중재법에서는 당사자들이 권한을 위임하

10) 김상호, “ADR제도를 통한 남북한 상사분쟁 해결방안”『국제상학』, 제19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12, pp.149-167.

11) 최석범·이용근, “동북아 각국의 중재판정부 구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국제상학』, 제20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5.6.

12) 한국 중재법 제29조 제1항

13) 한국 중재법 제29조 제2항

14) 한국 중재법 제29조 제3항

15) 한국 중재법 제29조 제4항

는 경우에 형평과 선에 따라 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임은 형평조항(equity clause)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형평조항은 중재인이 법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양당사자의 계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중재인은 상식적인 견해를 취하여야 하고 법적 전문성에 구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⁷⁾

2) 대만의 중재법

당사자들에 의해 명시적으로 수권받은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형평의 원칙(rules of equity)을 적용할 수 있다.¹⁸⁾ 한국의 중재법에서의 형평과 선에 의한 판정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형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양자의 차이는 없다고 판단된다. 즉, 당사자들이 약정하였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형평중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¹⁹⁾

3) 일본의 중재법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에 있어 준거해야 할 법은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결정한 것에 의한다. 이 경우에 있어 한 나라의 법령이 정해진 때는 반대의 의사가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결정은 저촉하는 내외 법령의 적용 관계를 정한 그 나라의 법령이 아니라 사안에 직접 적용되는 그 나라의 법령을 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준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는 때는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에 부쳐진 민사상의 분쟁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령으로 사안에 직접 적용되어야 하는 것을 적용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쌍방이 명시된 요구가 있는 때는 상기 규정에 관계없이 형평과 선에 의해 판정하는 것으로 한다.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에 회부된 민사상의 분쟁에 관계된 계약이 있는 때는 이것에 정해진 것에 따라 판정하고 해당 민사상의 분쟁에 적용할 수 있는 관습이 있는 때는 이것을 고려해야 한다.²⁰⁾

한국법과 같이 형평과 선에 의한 판정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습이 존재하는 경우 그 관습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상관습은

16) UNCITRAL모델법 제28조 (3).

17) Clive M. Schmitthoff, *EXPORT TRADE*, Stevens & Sons, 1990, p.656.

18) 대만 중재법 제31조

19) 최장호, 전개서, p.122.

20) 일본 중재법 제36조

어느 특정국가와도 관련되지 않은 국제적인 거래관행이므로 당사자의 공평에 적합하고 어느 정도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준거법으로 적용되곤 하는데 UNCITRAL모델법에서도 거래에 적용되는 무역관행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¹⁾

4) 싱가포르 중재법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실체에 적용가능한 것으로 당사자들에 의해 지정된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²²⁾ 만약 당사자들이 분쟁의 실체에 적용가능한 법률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러한 범위까지, 중재판정부는 국제사법에 의해 결정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²³⁾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그렇게 합의하였을 경우 당사자들에 의하여 합의되었거나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결정된 다른 고려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²⁴⁾

III. 중재판정의 형식과 효력

1.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1) 한국의 중재법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3인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은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지만 중재절차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거나 중재인 전원이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주재하는 중재인이 단독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다.²⁵⁾ 즉, 의장중재인의 단독적인 판정권한은 개별적인 중재절차에 한정되며²⁶⁾ 분쟁당사자의 이해가 크게 대립되는 국제상거래에서는 양당사자나 중재인 전원의 합의에 의한 수권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

21) UNCITRAL모델법 제33조 (3)

22) 싱가포르 중재법 제32조 (1)

23) 싱가포르 중재법 제32조 (2)

24) 싱가포르 중재법 제32조 (3)

25) 한국 중재법 제30조

26) 이호원, “개정중재법에 관한 소고”, 「중재」, 제302호, 대한상사중재원, 1999, p.14.

에²⁷⁾ 절차가 의장중재인이 단독으로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재판정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의장중재인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²⁸⁾과는 대비된다.

2) 중국의 중재법

판정은 다수 중재인의 의견에 따라야 하며 소수 중재인의 이의는 기록부에 기입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다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수석중재인의 의견에 따라 판정한다.²⁹⁾

즉, 중국의 중재법에서는 의장중재인 최종결정권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³⁰⁾ 중재판정부가 다수의 의견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장중재인의 의견에 따라 판정되도록 하고 있으나 제3의 중재인을 당사자가 공동으로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주임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중재위원회의 의도에 따라 중재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3) 대만의 중재법

중재판정의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1인 이상의 중재인인 경우 중재판정은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중재판정의 금액을 정하는데 있어 과반수 견해가 도출되지 못하는 경우 과반수 견해가 나올 때까지 가장 높은 금액과 그 다음 금액을 평균하여 산출한다. 중재인의 과반수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간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당해 중재절차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과반수 의결이 불가능하게 된 이유를 고지한다. 당사자가 상기의 고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의 소송절차를 개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민법 제133조는 전항에 적용되지 않는다.³¹⁾

대만의 중재법에서는 금액과 관련된 중재판정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과반수의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에 중재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27) 민용규, “UNCITRAL Model Law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5권 제1호, 한국 국제상학회, 2000, p.240.

28) 박상조·주기종·윤종진, 「國際商事仲裁法論」, 한울출판사, 1997, p.455.

29) 중국 중재법 제53조

30) 윤진기, “중국 중재법”, 「기업법연구」, 제12집, 한국기업법학회, 2003.3, p.260.

31) 대만 중재법 제32조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이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과반수의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의 한국의 중재법에서 가부동수인 경우에 해당중재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것과 그 취지가 같다고 볼 수 있다.³²⁾

4) 일본의 중재법

합의체인 중재판정부는 중재인의 상호선출에 의해 중재판정부의 장이 되는 중재인을 선임해야 한다. 합의체인 중재판정부의 의사는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인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동 규정에 관계없이 중재절차에 있어서 절차상의 사항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다른 모든 중재인의 위임이 있는 때는 중재판정부의 장이 되는 중재인이 결정할 수 있다. 동 규정은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³³⁾

절차상의 사항을 쌍방의 합의와 다른 중재인의 위임으로 의장중재인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중재법과 동일하다.

5) 싱가포르의 중재법

2명 이상의 중재인이 있는 중재절차에서 당사자들에 의해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그 모든 구성원의 전원 또는 과반수에 의해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절차의 어떤 문제가 의장중재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사자들 또는 중재판정부의 모든 구성원에 의해 수권되어야 한다.³⁴⁾ 이러한 절차상의 의사결정방식은 한국과 일본법의 규정과 동일하다.

2. 화해중재판정 및 중재판정전 조정

1) 한국의 중재법

중재절차의 진행중에 당사자들이 화해에 이른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그 절차

32) 한국중재법(1973) 제11조 (2).

33) 일본 중재법 제37조

34) 싱가포르 중재법 제19조

를 종료한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그 화해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³⁵⁾ 화해내용을 기재한 중재판정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중재판정임이 명시되어야 한다.³⁶⁾ 화해중재판정은 당해 사건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³⁷⁾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의 중재법은 중재절차중에 합의된 조건으로의 판정 즉, 화해 중재판정을 진정 중재판정(genuine arbitral award)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중국의 중재법

(1) 화해

당사자는 중재를 신청한 이후라도 자율적으로 화해할 수 있다. 화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화해합의에 근거하여 판정문을 작성해 줄 것을 중재판정부에 청구 할 수 있고 중재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다.³⁸⁾ 당사자가 화해합의를 하여 중재신청을 철회한 후에 번복하기를 원하면 중재합의에 근거하여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³⁹⁾

여타 동북아국가와는 달리 당사자들이 화해합의를 하여 중재신청을 철회한 후 번복하여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특이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에 화해판정을 청구한 후에도 철회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또한 문제가 된다.

(2) 조정

중재판정부는 판정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조정을 자원 할 때에는 중재판정부는 반드시 조정을 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시에 판정해야 한다. 조정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중재판정부는 조정서를 작성하거나 합의결과에 근거하여 판정문을 작성한다. 조정서와 판정문은 동등

35) 한국 중재법 제31조 제1항

36) 한국 중재법 제31조 제2항

37) 한국 중재법 제31조 제3항

38) 중국 중재법 제49조

39) 중국 중재법 제50조

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⁴⁰⁾

조정서에는 중재 청구와 당사자간의 합의결과를 명기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인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가 날인한 후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해야 한다. 조정서는 당사자 쌍방이 접수하면 즉시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조정서를 접수하기 전에 당사자가 번복하면 중재판정부는 적시에 판정해야 한다.⁴¹⁾

중국의 중재법에서 조정서를 작성하거나 판정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조정서와 판정문이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또한 특이하다.

3) 대만의 중재법

(1) 화해

중재합의 당사자들은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화해를 모색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중재절차 종료전에 화해에 이른 경우 중재인은 그 내용을 화해합의서에 기록해야 한다. 화해는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화해판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집행신청을 승인하고 집행명령을 내린 후에만 집행이 가능하다.⁴²⁾

대만의 중재법의 경우에 화해판정의 집행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2) 조정

반대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들은 해당 분쟁을 조정에 회부하여 중재인을 선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중재인은 그 결과를 조정합의서에 기록해야 한다. 조정합의는 중재절차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조정합의는 법원이 당사자의 집행신청을 승인하고 집행명령을 내린 후에만 집행이 가능하다.⁴³⁾

화해판정의 집행과 동일하게 대만의 중재법의 경우에 조정합의의 집행에 관

40) 중국 중재법 제51조

41) 중국 중재법 제52조

42) 대만 중재법 제44조

43) 대만 중재법 제45조

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중국의 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부가 판정전에 조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만의 중재법에서는 일방당사자가 분쟁을 조정에 회부하여 중재인 선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 양국의 중재법의 차이점이다.

4) 일본의 중재법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있어 중재절차에 부쳐진 민사상의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화해가 성립하고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는 때는 해당 화해에 의한 합의를 내용으로 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동 결정은 중재 판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동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결정서를 작성하고, 이것에 중재판정의 표시를 해야 하다. 당사자 쌍방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 또는 그 선임한 1인 또는 2인 이상의 중재인은 중재절차에 회부된 민사상의 분쟁에 관하여 화해를 시도할 수 있다. 상기 승낙 또는 그 철회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⁴⁴⁾

한국의 중재법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중재법에서는 화해판정에 중재판정의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재판정부나 중재인이 화해를 시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5) 싱가포르의 중재법

만약 중재절차 도중에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종결해야 하며, 또한 만약 당사자들에 의한 요구가 있고 중재판정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합의된 조건에 따른 중재판정 형식에 이러한 화해를 기록해야 한다.⁴⁵⁾

합의된 조건에 따른 중재판정문은 (a) 제38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b) 이를 중재판정으로 한다고 기재되어야 하고 (c) 당해 사건의 본안에 관한 다른 모든 중재판정과 동일한 지위와 효력을 가진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⁴⁶⁾

법원의 허가로 합의된 조건으로의 판정은 동일한 효력의 판결이나 명령과

44) 일본 중재법 제38조

45) 싱가포르 중재법 제37조 (1)

46) 싱가포르 중재법 제37조 (2)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강제될 수 있고 허가가 그렇게 되는 경우 판결은 중재판정의 취지로 기록될 수 있다.⁴⁷⁾ 한국과 일본의 중재법에서와 같이 싱가포르의 중재법에서는 화해중재판정문에 중재판정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3.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1) 한국의 중재법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중재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3인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경우에 과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중재인에게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중재인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⁴⁸⁾

중재판정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중재판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⁴⁹⁾ 중재판정에는 작성일자와 중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재판정은 당해 일자와 장소에서 내려진 것으로 본다.⁵⁰⁾ 작성·서명된 중재판정의 정본은 각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중재판정의 원본은 그 송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송부·보관한다.⁵¹⁾

일반적으로 대부분 국가들의 중재법에서 중재판정문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기재하는 것은 중재판정의 신뢰성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중재판정이 결론에 도달하게 된 합리적인 과정을 보증하고 중재의 신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에서 중재판정문에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중국의 중재법

판정문에는 중재청구, 쟁의사실, 판정이유, 판정결과, 중재비용의 부담과 판

47) 싱가포르 중재법 제37조 (3)

48) 한국 중재법 제32조 제1항

49) 한국 중재법 제32조 제2항

50) 한국 중재법 제32조 제3항

51) 한국 중재법 제32조 제4항

정일자를 명기해야 한다. 당사자가 쟁의 사실과 판정이유를 기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을 때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판정문에는 중재인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가 날인하여야 한다. 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중재인은 서명해도 되고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

중재판정부가 분쟁을 중재할 때 이미 분명히 밝혀진 일부분 사실에 대해 먼저 판정할 수 있다.⁵²⁾ 판정문은 작성일부터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⁵³⁾

다른 국가의 중재법과는 달리 중국의 중재법에서는 판정문에 중재위원회가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하고 판정문에 중재인이 서명하지 않는 경우 다른 중재인이 그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하는 다른 국가의 중재법과는 달리 중국의 중재법에서는 서명하지 않는 이유를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있다.

3) 대만의 중재법

분쟁에 대한 만족스런 결정이 내려지면 중재판정부는 심리를 종결하고 그로부터 10일 내에 당사자가 청구한 내용을 다룬 중재판정을 내려야 한다.

중재판정에는 ① 당사자의 성명, 주소 또는 거주지. 당사자가 법인 또는 기타 기관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본사, 주영업소 또는 사무소(주소), ②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또는 거주지, ③ 통역이 있는 경우 통역의 성명, 국적, 주소 또는 거주지, ④ 판정주문, ⑤ 당사자가 중재판정 이유의 기재가 필요없다는 합의를 하지 않은 한, 중재판정의 이유와 관련 사실, ⑥ 중재판정의 작성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⁵⁴⁾

중재판정의 원본은 중재인이 서명하여야 하는데 중재인이 중재판정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중재인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일본의 중재법

중재판정을 하는데 있어서 중재판정문을 작성하고, 여기에 중재판정을 한

52) 중국 중재법 제55조

53) 중국 중재법 제57조

54) 대만 중재법 제33조

중재인이 서명해야 한다. 단 중재판정부가 합의체인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인의 과반수가 서명하고, 다른 중재인의 서명이 없는 이유를 기재하면 된다. 중재판정문에는 이유를 기재해야 하지만,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재판정문에는 작성 연월일 및 중재지를 기재해야 하고 중재판정은 중재지에서 판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이 된 때는 중재인의 서명이 있는 중재판정문의 사본을 송부하는 방법에 의해 중재판정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⁵⁵⁾

5) 싱가포르의 중재법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서명되어야 하는데 (a) 중재인이 1명 일 경우, 그 중재인 자신에 의하여 또는 (b) 중재인이 2인 또는 그 이상인 경우, 모든 중재인 또는 기재된 중재인 중 어떤 중재인의 서명이 누락된 사유를 제공하는 중재인의 대다수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⁵⁶⁾ 중재판정문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유의 불기재에 관하여 합의하였거나 그 중재판정문이 제37조에 의하여 합의된 내용의 판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⁵⁷⁾ 중재판정문에는 중재판정의 일시 및 장소가 기재되어야 하고⁵⁸⁾ 중재판정은 중재지에서 내려진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⁵⁹⁾ 중재판정문이 작성된 후 (1)항의 하위조항에 따라 중재인에 의해 서명된 중재판정의 사본은 각 당사자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⁶⁰⁾

다른 국가의 중재법과 같이 싱가포르 중재법에서도 판정문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판정문에 서명하지 않는 중재인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4. 중재판정의 효력

55) 일본 중재법 제39조

56) 싱가포르 중재법 제38조 (1)

57) 싱가포르 중재법 제38조 (2)

58) 싱가포르 중재법 제38조 (3)

59) 싱가포르 중재법 제38조 (4)

60) 싱가포르 중재법 제39조 (5)

1) 한국의 중재법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⁶¹⁾ 이것은 중재판정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내용으로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다고 하는 판결설에 입각한 내용이다. 즉,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당사자는 이에 구속되는데 확정판결이란 형식적 확정력을 가진 판결로서 통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는 취소할 수 없는 판결을 의미한다.

2) 대만의 중재법

중재판정은 당사자를 구속하며 법원의 최종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⁶²⁾

3) 일본의 중재법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⁶³⁾

4) 싱가포르의 중재법

중재합의에 따른 중재판정부에 의한 중재판정은 최종적이고 당사자들을 또는 당사자들을 통하여거나 그들에 의거하여 청구하는 어떠한 당사자를 구속하고 소관사법권의 어떠한 법원에서의 어떤 절차에서 변론, 상계청구 또는 기타를 통하여 당사자 일방에 의해 의존할 수 있다.⁶⁴⁾

제43조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제33조에 따라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을 포함하여 중재판정이 이루어지자마자,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을 변경하고, 수정하고, 정정하고, 추가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⁶⁵⁾ (2)항의 목적상, 중재판정은 제38조에 따라 서명되고 인도되었을 때 중재판정이 이루어진다.⁶⁶⁾ 본 조항이 어떠한 이용 가능한 항소 또는 재심의 중재절차에 의하거나 본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일방 당사자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⁶⁷⁾

61) 한국 중재법 제35조

62) 대만 중재법 제37조

63) 일본 중재법 제45조

64) 싱가포르 중재법 제44조 (1)

65) 싱가포르 중재법 제45조 (2)

66) 싱가포르 중재법 제45조 (3)

5. 중재판정의 취소

1) 한국의 중재법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제기하는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의하여만 할 수 있고 법원은 <표 1>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⁶⁸⁾ 중재판정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해석 또는 추가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⁶⁹⁾ 당해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⁷⁰⁾

<표 1> 중재판정 취소의 사유

| 구분 | 내용 |
|--------------------------------|--|
|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명하여야 하는 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그 준거법에 의하여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이었던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무효인 사실 ·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부분만을 취소 ·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 |
|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하는 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때 ·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 |

67) 싱가포르 중재법 제44조 (3)

68) 한국 중재법 제36조 제1항

69) 한국 중재법 제36조 제3항

70) 한국 중재법 제36조 제4항

일반적으로 중재판정에서 패소한 자가 중재판정에 불복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에는 중재판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거나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프랑스와 영국을 제외하고는 법원에 대한 상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중재판정의 구제수단으로서 보편적인 방법이 바로 중재판정 취소의 소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서양속은 한 나라의 정치적 입장이나 국제적인 질서로서 정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의미하는데 중재판정이 중재지국가의 공서양속의 개념에 반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재합의의 무효 또는 비타당성, 중재절차상 적법절차위반, 중재판정부의 무관한·유월판정, 중재판정부의 구성 및 중재절차상의 하자, 중재부적합사항에 대한 판정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중재판정이 취소되는 사유에 해당된다.⁷¹⁾

2) 중국의 중재법

당사자가 판정에 ①중재합의가 없는 경우, ②판정사항이 중재합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위원회가 중재할 권한이 없는 것일 경우, ③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법정 절차를 위반하였을 경우, ④판정시 근거한 증거가 위조일 경우, ⑤상대방 당사자가 공정한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은폐했을 경우, ⑥중재인이 해당 사건 중재시 뇌물을 강요, 수취하고 부정행위와 위법적인 판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판정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⁷²⁾

인민법원은 합의판정부를 구성하여, 판정에 상기 상황 중의 하나가 있음을 심사 확인하면 취소를 판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해당 판정이 사회공공이익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면 반드시 취소를 판결해야 한다.

당사자가 판정 취소를 신청할 경우에는 판정문 입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⁷³⁾

71) 박상조·주기종·윤종진, 전개서, pp.462-466.

72) 중국 중재법 제58조

73) 중국 중재법 제59조

인민법원은 판정취소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정 취소 또는 신청 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⁷⁴⁾ 인민법원은 판정 취소 신청을 수리한 후, 중재판정부가 다시 중재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한내에 재중재할 것을 중재판정부에 통지하고 취소절차 중지를 판결한다. 중재판정부가 재중재를 거절하면 인민법원은 취소절차 회복을 판결해야 한다.⁷⁵⁾

3) 대만의 중재법

(1) 중재판정의 취소

당사자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법원에 중재판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① 제38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중재합의가 무효이거나 중재절차의 종료 전에 무효가 된 경우
- ③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 중에 당사자에게 자신의 사안에 대해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본안에 대한 충분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경우
- ④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합의 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⑤ 중재인이 동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의무를 위반하였거나 편파성을 보인 경우 또는 중재인기피신청이 있었으나 중재인이 계속 절차를 진행한 경우. 다만, 중재인기피신청이 법원에 의해 각하되지 않았어야 한다.
- ⑥ 중재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 위반이 형사상의 책임을 수반하는 경우
- ⑦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중재와 관련하여 형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 ⑧ 중재판정의 근거가 된 증거 또는 번역본이 위조 또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변경되었거나 오역된 경우
- ⑨ 중재판정의 근거가 된 형사 또는 민사상의 판결 또는 행정판결이 그 후의 다른 판결에 의해 번복 또는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74) 중국 중재법 제60조

75) 중국 중재법 제61조

상기 6호 내지 8호는 최종선고가 내려졌거나, 형사소송절차가 아직 개시되지 않았거나 증거부족 이외의 사유로 계속 중인 경우에 한한다. 중재합의 위반에 관한 위 4호와 5호 내지 9호는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한에서만 적용된다.

(2) 중재판정 취소의 소와 중재판정 집행정지 신청

중재판정취소의 소는 중재지 관할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중재판정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의 법정 기간 내에 관할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동법 제40조 6호 내지 9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이 당사자의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닌 경우 위 30일의 기한은 당사자가 취소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중재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중재판정취소의 소는 제기 할 수 없다.⁷⁶⁾

일방당사자가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신청인이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면 신청인의 중재판정 집행정지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중재판정을 취소하면서 법원은 동 중재판정에 관하여 내려진 집행명령도 함께 취소해야 한다.⁷⁷⁾ 중재판정이 법원의 최종판결로 취소되면 일방당사자는 당사자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당해 분쟁을 법원의 소송절차에 따르도록 할 수 있다.⁷⁸⁾

4) 일본의 중재법

당사자는 ①중재합의가 당사자의 능력부족으로 인해 그 효력을 갖지 않을 때, ②중재합의가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중재합의에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지정한 법령(해당 지정이 없는 때는 일본의 법령)에 의하면 당사자 능력의 부족 이외의 사유에 의해 그 효력을 갖지 않을 때, ③신청인이 중재인의 선임절차 또는 중재절차에 있어서 일본의 법령(그 법령이 공공의 질서에 관계하지 않는 규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때는 해당 합의)에 의해 필요로 하는 통지를 받지 않았을 때, ④신청인이 중재절차에 있어서 방어가 불 가능 했었던 때, ⑤중재판정이 중재 합의 또는 중재절차에 있어서 신청의 범위

76) 대만 중재법 제41조

77) 대만 중재법 제42조

78) 대만 중재법 제43조

를 초과한 사항에 관한 판정을 포함한 것일 때, ⑥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일본의 법령(그 법령이 공공의 질서에 관련하지 않는 규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때는 해당 합의)에 위반했을 때, ⑦중재절차에 있어서의 신청이 일본의 법령에 의하면 중재 합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분쟁에 관한 것일 때, ⑧중재판정의 내용이 일본에 있어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한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중재판정 취소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취소의 신청은 중재판정문 사본의 송부에 의한 통지가 된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 결정이 확정된 때는 할 수 없다. 법원은 취소의 신청에 관계된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한 경우에 있어도 상당히 인정한 때는,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해당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⁷⁹⁾

5) 싱가포르 중재법

법원에 의한 중재판정은 다음의 경우에 파기될 수 있다. 첫째, 법원에 중재판정을 파기하도록 신청한 당사자가 법원이 만족하게 다음을 입증하는 경우이다.⁸⁰⁾

- (i) 중재판정에 대한 일방당사자가 무능력인 경우
- (ii)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그것을 종속시킨 법률이나 그에 대한 어떠한 표시가 없는 경우 싱가포르의 법률에 의거하여 무효인 경우.
- (iii) 중재신청을 한 일방당사자가 중재인의 지정이나 중재절차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제공받지 않거나 또는 달리 자신의 본건을 진술할 수 없었던 경우
- (iv) 중재에 부탁된 문제에 관한 결정이 그렇게 부탁되지 않은 문제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 중재에 부탁되지 않은 문제에 관한 판결을 포함하고 있는 판정의 일부가 파기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이 중재에 의해 의도되지 않거나 중재부탁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쟁을 다루거나 중재부탁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에 관한 판결을 포함하

79) 일본 중재법 제44조

80) 싱가포르 중재법 제48조 (1)(a)

고 있는 경우

- (v) 그러한 합의가 당사자들이 일탈할 수 없는 본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거나 그러한 법이 없는 경우에는 본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중재재판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지 않은 경우
- (vi) 중재판정이 사기나 위법행위에 의해 유발되거나 영향을 받은 경우
- (vii)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의 위반이 일방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된 중재판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우

둘째, 법원이 다음을 알게 되는 경우이다.⁸¹⁾

- (i) 분쟁의 대상이 본법에 의거한 중재절차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 (ii) 중재판정이 공익과 반대되는 경우

중재판정을 폐기하기 위한 신청은 신청을 한 당사자가 중재판정을 수취한 후 날로부터 또는 제43조에 의거하여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그 청구가 중재판정부에 의해 처리되었던 일자로부터 3개월의 기간 만기 후에 이루어질 수 없다.⁸²⁾

6. 중재판정의 정정, 해석

1) 한국의 중재법

당사자들이 달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정⁸³⁾·해석⁸⁴⁾ 또는 추가판정⁸⁵⁾을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는데⁸⁶⁾ 정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⁸⁷⁾ 중재판정부는 정정·해석의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가판정의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상기의 해석은 중재판정의 일부를 구성한

81) 싱가포르 중재법 제48조 (1)(b)

82) 싱가포르 중재법 제48조 (2)

83) 중재판정의 오산·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의 정정

84)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중재판정의 일부 또는 특정쟁점에 대한 해석

85) 중재절차에서 주장되었으나 중재판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에 관한 추가판정.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6) 한국 중재법 제34조 제1항

87) 한국 중재법 제34조 제2항

다.⁸⁸⁾ 그리고 중재판정부는 판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직권으로 정정을 할 수 있다.⁸⁹⁾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정·해석이나 추가판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⁹⁰⁾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규정은 중재판정의 정정·해석 또는 추가판정의 형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⁹¹⁾

여기서 추가판정이란 최종중재판정의 일종으로 중재판정부가 중재에 부탁된 분쟁의 전부에 대하여 판정할 의사로 판정하였으나 객관적으로 부탁된 분쟁사안에 대하여 판정을 유탈하였을 경우 추후에 중재절차를 재개하여 유탈부분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보충적 판정을 의미한다.⁹²⁾ 즉, 한국의 중재법에서는 판정 유탈된 분쟁사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중국의 중재법

판정문 중의 문자, 계산 착오 또는 중재판정부가 판정하였으나 판정문에 누락된 사항은 중재판정부가 보충, 시정해야 하며 당사자는 판정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보충,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⁹³⁾ 한국의 중재법에서 추가판정을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에 비하여 중국의 중재법에서는 문자나 계산 상의 착오 또는 판정된 내용중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3) 대만의 중재법

중재판정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판정의 오산·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법원에 이러한 수정사항을 서면 통지해야 한다. 상기의 규정은 중재판정의 원본과 정본 사이의 불일치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⁹⁴⁾

88) 한국 중재법 제33조 제3항

89) 한국 중재법 제33조 제4항

90) 한국 중재법 제33조 제5항

91) 한국 중재법 제33조 제6항

92) 우성구, “UN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적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p.117.

93) 중국 중재법 제56조

다른 국가와는 달리 중재판정의 원본과 정본 사이의 불일치를 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특이하다.

4) 일본의 중재법

(1) 중재판정의 정정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중재 판정에 있어서의 계산착오, 오기 그 밖에 이들과 유사한 과오를 정정할 수 있다. 동 신청은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판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다. 당사자는 동 신청을 할 때에는 미리 또는 동시에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신청의 내용을 기재한 통지를 보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신청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정에 관한 규정은 중재판정정정의 결정 및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준용한다.⁹⁵⁾

(2) 중재판정부에 의한 중재 판정의 해석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중재판정의 특정한 부분의 해석을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동 신청은 당사자간에 관련된 신청을 할 수 있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⁹⁶⁾

(3) 추가 중재판정

당사자는 중재절차에 있어서의 신청내용이 중재판정에서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해당 신청에 대한 중재판정을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청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하다.⁹⁷⁾

한국의 중재법과 마찬가지로 추가판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청

94) 대만 중재법 제35조

95) 일본 중재법 제41조

96) 일본 중재법 제42조

97) 일본 중재법 제43조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신청에 대한 판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IV. 중재판정의 승인·집행과 주요내용 비교

1.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1) 한국의 중재법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판결에 의하고⁹⁸⁾ 대한민국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판정의 취소의 사유가 없는 한 승인 또는 집행되어야 한다.⁹⁹⁾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동 협약에 의한다.¹⁰⁰⁾

여기서 중재판정의 승인이란 중재판정이 기판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원이 승인하는 것이고 중재판정의 집행은 중재에서 패한 당사자가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중재법상 국내중재판정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

2) 중국의 중재법

당사자는 판정을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일방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받은 인민법원은 이를 집행해야 한다.¹⁰¹⁾

피신청인이 판정에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¹⁰²⁾에 규정한 상황중의 하나가

98) 한국 중재법 제37조 제1항

99) 한국 중재법 제37조 제3항

100) 한국 중재법 제37조 제4항

101) 중국 중재법 제62조

102) (1) 당사자가 계약중에 중재조항을 규정하지 않았거나 사후에 서면의 중재부탁에 이르지 못한 경우, (2) 판정된 사항이 중재합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기구가 중재할 권한이 없는 경우, (3)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법정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4) 사실인정의 주요증거가 부족한 경우, (5) 법률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6) 중재인이 해당 사건을 중재할 때 뇌물을 수취하고 사리사욕을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면 인민법원은 합의판정부를 구성하여 심사 확인한 후 집행 불가를 판결한다.¹⁰³⁾

당사자 일방이 판정 집행을 신청하고 다른 일방 당사자가 판정 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집행 중지를 판결해야 한다.¹⁰⁴⁾ 인민법원은 재결 취소를 재정할 경우, 집행 종결을 결정해야 한다. 판정취소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집행 회복을 결정해야 한다.

동북아 타국가의 중재법과는 달리 집행불가에 해당하는 사유를 민사소송법을 원용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 또한 중국의 중재법상의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집행불가에 해당되는 사유가 중재판정 취소의 사유에 해당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대만의 중재법

중재판정은 관할법원이 집행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가 집행에 서면으로 동의하고 중재판정이 ① 특정금액, 대체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 ② 특정 동산의 양도에 관한 사항일 경우 당해 중재판정은 법원의 집행명령 없이도 집행이 가능하다. 상기의 규정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중재와 관련이 있는 다음에 해당되는 자에게도 구속력을 가진다.¹⁰⁵⁾

- ① 중재절차 개시 후에 당사자의 승계자가 된 자, 당사자 또는 그 승계인의 분쟁대상 자산을 소유하게 된 자
- ② 당사자가 그를 대신하여 중재절차에 참여하게 된 단체·법인 또는 그 단체법인 승계인, 위 단체법인 또는 그 승계인의 분쟁대상 자산을 소유하게 된 자

법원은 ①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없고 만약 분리할 경우 중재판정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중재판정 이유의 기재가 없고 이러한 불기재가 중재판정부에 의해 치유되지 않은 경우, ③

채우기 위하여 위법한 판정행위를 한 경우

103) 중국 중재법 제63조

104) 중국 중재법 제64조

105) 대만 중재법 제37조

중재판정부가 이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당사자에게 지시한 경우의 사유가 있는 경우 중재판정의 집행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대만의 중재법에서는 당사자가 집행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법원의 집행명령 없이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내용이다. 그리고 또한 중국의 중재법과 같이 법원의 집행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4) 일본의 중재법

(1) 중재판정의 승인

중재판정(중재지가 일본 국내에 있는가의 여부를 불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해당 중재판정에 근거한 민사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집행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결정에 있어서 9가지의 예외규정¹⁰⁶⁾을 두고 있다.¹⁰⁷⁾

(2) 집행결정

중재 판정에 근거하여 민사 집행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채무자를 피 신청인으로서 법원에 대하여 집행 결정(중재 판정에 근거한 민사 집행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말함)을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45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한 재판기관에 대하여 중재 판정의 취소 또는 그 효

106) ① 중재 합의가 당사자의 능력 부족에 의해 그 효력을 갖지 않을 것, ② 중재 합의가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중재 합의에 적용해야 할 것으로 지정한 법령(해당지정이 없는 때는 중재지가 속한 나라의 법령)에 의하면 당사자의 능력의 부족 이외의 사유에 의해 그 효력을 갖지 않을 것, ③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임 절차 또는 중재절차에 있어서 중재지가 속한 나라의 법령의 규정(그 법령의 공공의 질서에 관계하지 않는 규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때는 해당 합의)에 의해 필요로 하는 통지를 받지 않았을 것, ④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있어 방어하는 것이 불가능했었을 것, ⑤ 중재 판정이 중재합의 또는 중재절차에 있어서 신청의 범위를 초과한 사항에 관한 판정을 포함한 것일 것, ⑥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지가 속한 나라의 법령의 규정(그 법령의 공공의 질서에 관계하지 않는 규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때는 해당 합의)에 위반한 것이었을 것, ⑦ 중재지가 속한 나라(중재절차에 적용된 법령이 중재지가 속한 나라 이외 나라의 법령인 경우에는 해당국)의 법령에 의하면 중재 판정이 확정되지 않을 것, 또는 중재판정이 나라의 재판 기관에 의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것, ⑧ 중재절차에 있어서 신청이 일본의 법령에 의하면 중재 합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분쟁에 관한 것인 것, ⑨ 중재판정의 내용이 일본에 있어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한 것

107) 일본 중재법 제45조

력의 정지를 요구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제1항의 신청에 관계된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동항의 신청을 한 자의 신청에 의해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¹⁰⁸⁾

중국과 대만의 중재법과 마찬가지로 집행결정을 요구하는 신청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5) 싱가포르의 중재법

중재합의에 따라 중재판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중재판정은 법원의 허가로 동일한 취지의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과 동일한 방법으로 강제될 수 있다.¹⁰⁹⁾ 법원의 허가가 그렇게 승인되는 경우, 판결은 중재판정의 취지로 기록될 수 있고¹¹⁰⁾ 제3조에도 불구하고, (1)항은 중재지가 싱가포르 또는 기타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중재판정에 적용되어야 한다.¹¹¹⁾

2. 중재판정에 대한 주요내용 비교

1)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관련 주요 내용 비교

동북아 각국의 중재판정 형식과 내용 관련 규정을 비교하면 <표 2>와 같은데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과 관련하여 한국, 일본, 싱가포르는 당사자가 지정한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국의 중재법에서는 중재계약의 법률적용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¹¹²⁾ 특히 섭외중재계약의 효력을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 판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실제로 중국의 중재실무에서는 중재기관이 정부기관이므로 기관중재인 경우 준거법도 대체로 중국법인 경우가 대부분이다.¹¹³⁾ 그러나 법률적 근거도 없이 외국인과 관련된 섭외중재계약의 효력유무를 일방적으로 중국의 법률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경우 외국인 당사자가 불복할 가능성이 많다.¹¹⁴⁾ 그러나 스톡홀름이나 스위스중재기관의 중재에 응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인정하는 경향

108) 일본 중재법 제46조

109) 싱가포르 중재법 제46조 (1)

110) 싱가포르 중재법 제46조 (2)

111) 싱가포르 중재법 제46조 (3)

112) 윤진기, 전계서, p.249.

113) 장문철, 전계서, p.128.

114) 성백영,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의 내용과 문제점 고찰-섭외중재제도를 중심으로”, 제18회 정례학술발표회논문집, 한중법학회, 1998.3.26, pp.26-27.

을 보여주고 있다.¹¹⁵⁾

한국과 대만, 일본은 형평과 선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고 한국과 일본은 계약 및 해당거래관습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을 보여 주고 있다.

화해와 조정과 관련하여 각국 모두 화해규정을 두고 있으나 중국과 대만만이 조정규정을 두고 있다. 중재인의 판정문 서명과 관련하여 중국을 제외하고는 일부중재인의 미서명시 다른 중재인이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공통점이지만 한국의 경우 이유기재와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중재판정의 효력과 관련해서 중국은 법적 효력에 대한 명시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한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는 확정판결과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동북아 각국의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관련 규정의 비교

| 구분 | 한국 | 중국 | 대만 | 일본 | 싱가포르 |
|------------------------|---|---|--|--|--|
|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가 지정한 법 · 지정이 없는 경우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 형평과 선 · 계약 및 해당 거래의 상관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재에 적용할 절차법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법과 민사소송법, 기타 절차법을 적용 · 형평의 원칙을 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 · 합의가 없는 경우 분쟁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령 · 형평과 선 · 계약 및 해당 거래의 상관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의 지정한 법률 ·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법률 ·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되었거나 판정부에 의해 결정된 기타고려사항 |
| 중재 판정부의 의사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재판정부의 과반수의 결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 중재인의 의견 · 다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수석중재인의 의견에 따라 판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이상의 중재인의 경우 과반수의 결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인의 과반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재판정부의 전원 또는 과반수 |

115) Eric Lee, *Commercial Dispute Settlement in China*, Lloyd's of London Press, 1985, p.26.

<표 2> 동북아 각국의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관련 규정의 비교

| 구분 | 한국 | 중국 | 대만 | 일본 | 싱가포르 |
|----------|---|--|--|---|---|
| 화해 및 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해시 절차 종료, 당사자 의 요구로 화해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기재,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적으로 화해가능, 화해합의에 의해 판정문 작성은 당사자가 요구·판정부는 판정 전에 조정가능, 조정합의가 되면 조정서나 합의결과에 근거한 판결문작성, 조정서와 판결문은 동등한 법적 효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자들은 화해모색가능, 화해시 화해합의서 기록,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 당사자들은 조정에 회부 가능, 조정시 조정합의서에 기록, 화해와 동일한 효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자 간에 화해가 성립하고 당사자의 신청시 화해합의 내용으로 결정, 중재판정으로서의 효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재절차중에 분쟁 해결시 당사자의 요청과 중재판정부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합의된 조건으로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기록 |
| 중재판정의 형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면으로 작성, 중재인의 전원의 서명 일부중재인의 미서명시 다른 중재인의 이유기재 및 서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재인이 서명, 중재인의 서명거부와 서명불가의 경우 다른 중재인이 이유기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재인이 서명거부와 서명불가의 경우 다른 중재인이 미유기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재판정문 작성, 중재인의 서명 합의체인 경우 과반수서명 및 다른 중재인의 미서명이유 기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면으로 작성, 서명되어야 함(중재인 1인 또는 중재인의 서명이 누락된 사유를 기재하는 중재인의 대다수) |
| 중재판정의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재판정 이유, 작성일자, 중재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재청구, 쟁의사실, 판정이유, 판정결과, 중재비용의 부담, 중재일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자의 관련사항, 대리인관련사항, 통역관련사항, 판정주문, 판정이유, 작성년월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재판정 이유, 작성년월일 및 중재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재판정이유, 중재판정의 일시와 장소 |

2) 중재판정의 효력과 승인 · 집행 관련 규정의 비교

동북아각국의 중재판정의 효력과 승인 · 집행 관련 규정을 비교하여 보면 <표 3>과 같다. 우선, 중재판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고 있으며 중재판정의 취소사유의 경우에는 모든 국가에서 당사자 증명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법원의 인정사유도 규정하고 있다.

중재판정의 정정과 해석과 관련해서는 우선 싱가포르의 중재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고 한국, 중국, 대만, 일본의 중재법에서는 판정문의 오류 등을 정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중재법에서는 판정문의 특정부분에 대한 해석과 신청내용이 판정에 누락된 것에 대한 추가판정을 당사자가 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과 차이가 있다.

중재판정의 승인 · 집행과 관련하여 모든 국가에서 중재판정의 승인 · 집행을 위해 법원의 승인이나 집행판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점이 없고 단지 대만의 중재법 경우에는 당사자가 집행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법원의 집행명령 없이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표 3> 동북아 각국의 중재판정의 효력과 승인·집행 관련 규정의 비교

| 구분 | 한국 | 중국 | 대만 | 일본 | 싱가포르 |
|-------------------------|--|---|---|--|--|
| 중재 판정의 효력 | ·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 한 효력 | · 법적 효력에 대한 명시규 정 없음 | · 법원의 최종판결 과 동일한 효력 | ·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 · 중재판정부 의 판정은 최종적임 |
| 중재 판정의 취소 사유 | · 당사자 증명 사유 · 법원의 인정 사유 | · 당사자 증명 사유 | · 당사자 증명사유 | · 당사자 증명 사유 | · 당사자 증명 사유 · 법원의 인정 사유 |
| 중재 판정의 정정, 해석 | · 중재판정정 본 수취후 30일 이내에 정정, 해석, 추가 판정을 신청 · 중재판정부 는 판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직권 으로 정정 | · 판정문 종의 문자, 계산 착오 또는 중재판정부 가 판정하였 으나 판정문 에 누락된 사항은 중재 판정부가 보 충, 시정 · 당사자는 판 정문 접수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 판정부에 보 충, 시정을 청구 | · 중재판정부는 직 권 또는 당사자 의 신청에 따라 중재판정의 오 산·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 류를 수정 | ·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신 청이나 직권 으로 중재판 정의 계산착 오, 오기, 기 타 유사한 과 오를 정정 · 당사자는 중 재판정의 특 정부분의 해 석을 신청 · 신청 내용이 중재판정에서 누락된 경우 추가 중재판 정을 신청 | · 관련내용 없음 |
| 중재 판정의 승인 · 집행 | ·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판 결에 의하 고 ¹⁾ 대한민 국내에서 내 려진 중재판 정은 중재판 정의 취소의 사유가 없는 한 승인 또 는 집행 | · 당사자 일방 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는 다른 일 방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의 관련 규 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신청 | · 관할법원집행명 령없이 집행불가 · 당사자가 집행에 서면으로 동의하 고 중재판정이 ① 특정금액, 대 체물품 또는 유 가증권의 지급, ② 특정동산의 양도에 관한 사 항일 경우 법원 의 집행명령 없 이 집행 가능 | · 중재판정에 근거한 민사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집행 결정이 있어야 함 | · 중재판정은 법원의 협 의로 동일 한 취지의 법원의 판 결이나 명 령과 동일 한 방법으 로 강제 |

3) 중재판정의 취소의 사유 규정의 비교

중재판정의 취소의 사유는 각국의 중재법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었으나 뉴욕협약이나 UNCITRAL모델법에 따라 통일화되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재합의 무효 또는 비타당성은 중재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무능력자이거나 중재계약이 준거법이나 중재지법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중재절차상 적법절차위반은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임이나 중재절차에 관한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기타이유로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당한 경우이다. 중재판정부의 무권한·유월판정은 중재판정부가 중재계약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범위를 벗어난 분쟁에 대하여 판정을 내리는 경우를 의미한다. 중재판정부의 구성 및 중재절차상의 하자는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중재판정부가 정한 절차에 반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지는 경우이다. 중재부적합사항에 대한 판정은 당사자 자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분쟁에 대한 판정이 내려진 경우이다. 이 경우 중재부적합사항으로 법원은 직권으로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판정은 중재지국가의 공성양속의 개념에 반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지는 경우이다. 이러한 분류기준에 의해 동북아국가의 중재판정의 취소사유의 규정유무를 살펴보면 <표 4>과 같다.

중재판정 취소의 사유에 대한 각국의 중재법상의 규정을 비교하면 한국, 일본,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중국과 대만은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중재판정의 취소의 사유 규정 유무에 대한 비교

| 구분 | 한국 | 중국 | 대만 | 일본 | 싱가포르 |
|-----------------------|----|----|----|----|------|
| 중재합의 무효 또는 비타당성 | 0 | 0 | 0 | 0 | 0 |
| 중재절차상 적법절차 위반 | 0 | × | 0 | 0 | 0 |
| 중재판정부의 무권한·유월판정 | 0 | 0 | 0 | 0 | 0 |
| 중재판정부의 구성 및 중재절차상의 하자 | 0 | 0 | 0 | 0 | 0 |
| 중재부적합사항에 대한 판정 | 0 | × | × | 0 | 0 |
| 공서양속에 반하는 판정 | 0 | 0 | × | 0 | 0 |

V. 결론-시사점

이상과 같이 싱가포르를 포함하여 동북아국가들의 중재법상 중재판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동북아지역이 FTA를 체결하여 하나의 경제권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역내무역은 상당히 증가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역내무역의 증가에 따른 무역분쟁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동북아지역내에서의 무역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중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북아국가들의 중재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우선, 동북아각국의 중재법이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국제상사 중재제도에 국제적인 통일법을 제정한 UNCITRAL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UNCITRAL은 세계적인 통일성을 지닌 모델법을 제정하여 각국에서 이를 채용하도록 권장하여 왔고 한국, 대만, 일본 등의 국가에서 이러한 취지를 수용하여 자국법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UNCITRAL모델법의 내용이 수용되어 중재법의 통일화가 진전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통일화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북아각국의 중재법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측면에서 준거법의 경우 다른 여타국에 비하여 중국의 중재법은 어떠한 규정도 없어 준거법과 관련한 문제점을 야기시킬 가능성 이 높다. 준거법으로서 한국, 대만, 일본의 중재법은 형평과 선을 규정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의 중재법은 계약 및 해당거래관습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이 대다수 국가에서 과반수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의 중재법에서는 다수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석중재인의 의견에 따라 판정하도록 하고 있는 의장중재인 최종결정권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석중재인을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중재판정의 객관성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화해중재판정 및 조정과 관련해서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의 중재법에서는 화해를 규정하고 있고 대만과 중국의 중재법에서는 화해와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중재판정의 형식의 경우 중국의 중재법에서는 중재위원회

의 날인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타국과의 큰 차이점이다.

중재판정 취소의 사유에 대한 규정도 여타국과와는 달리 중국과 대만의 중재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중국의 중재법에서는 중재절차상 적법절차 위반과 중재부적합사항에 대한 판정 사유가 없고 대만의 중재법에서는 중재부적합사항에 대한 판정과 공서양속에 반하는 판정사유가 없다. 대만과 중국의 중재법에서 중재판정 취소의 사유가 달리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재판정의 정정과 해석과 관련해서는 우선 싱가포르의 중재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고 한국, 중국, 대만, 일본의 중재법에서는 판정문의 오류 등을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중재법에서는 판정문의 특정부분에 대한 해석과 신청내용이 판정에 누락된 것에 대한 추가판정을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국가들과 차이점이다.

이상과 같이 동북아국가의 중재법상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중재계약시 준거법 선정 등에 유의하여 중재법 적용상의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동북아국가에서의 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UNCITRAL모델법을 근거로 하여 차이점이 있는 내용을 각국의 중재법이 일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면 동북아지역에서의 중재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중재기관들이 지속적인 모임을 통하여 동북아국가에서의 중재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参考文献

- 김상호, “ADR제도를 통한 남북한 상사분쟁 해결방안” 「국제상학」, 제19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12.
- 민용규, “UNCITRAL Model Law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5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0.
- 박상조 · 주기종 · 윤종진, 國際商事仲裁法論, 한울출판사, 1997.
- 성백영,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의 내용과 문제점 고찰-섭외중재제도를 중심으로”, 제18회 정례학술발표회논문집, 한중법학회, 1998.3.26.
- 신군재 · 김경배, “중국의 ADR제도와 국제중재판정의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9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3.
- 우성구, “우리나라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적용상의 쟁점” 국제상학, 제14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1999.11.
- 우성구, “UN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적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윤진기, “중국 중재법”, 기업법연구, 제12집, 한국기업법학회, 2003.3.
- 이주원, “CIETAC 중재의 중재절차상 실무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9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6.
- 이호원, “개정 중재법에 관한 소고”, 「중재」, 제302호, 대한상사중재원, 1999.
- 장문철, “동북아국가들과 캐나다의 상사중재법의 상이점”, 캐나다연구, 제2집,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1990.
- 최석범, “중국상사중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중재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12.
- 최석범 · 이용근, “동북아 각국의 중재판정부 구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국제상학」, 제20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5.6.
- 최장호, “한국과 대만의 중재법 개정에 관한 비교연구”, 국제상학, 제14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1999.11.
- 홍성규 · 김종락, “개정 한국중재법의 주요논점과 과제”, 국제상학, 제18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3.6.
- 홍창기, “국제상사중재제도에 있어서 중재판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무역학회지」, 제28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3.6.
- Domke, Martin, *Domke on Commercial Arbitration: The Law and Practice*

64 「貿易商務研究」第 27 卷 (2005. 8), 第 1 編 國際賣買・仲裁

of Commercial Arbitration, Callaghan & Company, 1984

Lee, Eric, *Commercial Dispute Settlement in China*, Lloyd's of London Press, 1985.

Schmitthoff, Clive M., *EXPORT TRADE*, Stevens & Sons, 1990.

ABSTRACT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Arbitral Award under Arbitration Laws in
Northeast Asian Nations

Choi, Seok Beom

Northeast Asian economies have achieved high levels of growth due to a stable economic environments and economic policy reforms for free trade. As Northeast Asia has been risen as big bloc in the world and in the future in case free trade agreement could be concluded, trade volume could be increased dramatically. And it is evident that disputes will be increased in Northeast Asian economic bloc.

Arbitration must be popular in resolving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in Northeast Asian bloc in order to increase the volume of intra-trade in the bloc. Through arbitration, the parties can have full autonomy and can resolve disputes independently, impartially and without delay. But in order for the parties to make use of arbitration in the bloc, they must be fully aware of the arbitration laws of Northeast Asian nations in view of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 of the laws.

Therefore, this paper deals with arbitral award in Northeast Asian Nations' arbitration laws in view of comparative law.

Key words : Northeast Asia, Arbitration, Arbitral Award, Comparative Law